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4. 04.



국 토 교 통 부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1.1 계획의 배경
- 1.2 계획의 목적
-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1.5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6 계획의 내용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 현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광역시의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수용 능력의 한계와 주차난 등의 혼잡이 발생되고 있어 공항시설을 이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공항이용편의 제고가 시급함.
- 또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구 공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대구국제공항의 이전도 필요한 상황임.

1.2 계획의 목적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 기본계획”의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됨.

〈표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환경부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의거 작성함.

1.5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5.1 추진경위

- 2013년 04월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6년 07월 : 군 공항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
- 2020년 08월 : 군 공항 및 대구공항 최종 이전부지 선정(군위소보, 의성비안)
- 2023년 04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2023.08.26.)
- 2023년 08월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 2023년 10월 :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 2023년 12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4년 03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평가준비서 심의

1.5.2 향후계획

- 2024년 04월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4년 06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예정)
- 2025년 : 환경영향평가(예정)
- 2030년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예정)

1.6 계획의 내용

1.6.1 계획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1.6.2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1.6.3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1.6.4 협의기관 : 환경부

1.6.5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

1.6.6 기 간

- 설계·건설 : 2025년 ~ 2030년
- 개항년도 : 2030년(예정)

1.6.7 계획 주요 내용

- 추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여객 및 화물터미널, 부대 건물
- 공항 접근도로(L = 11.0km)
- 주차장 및 커브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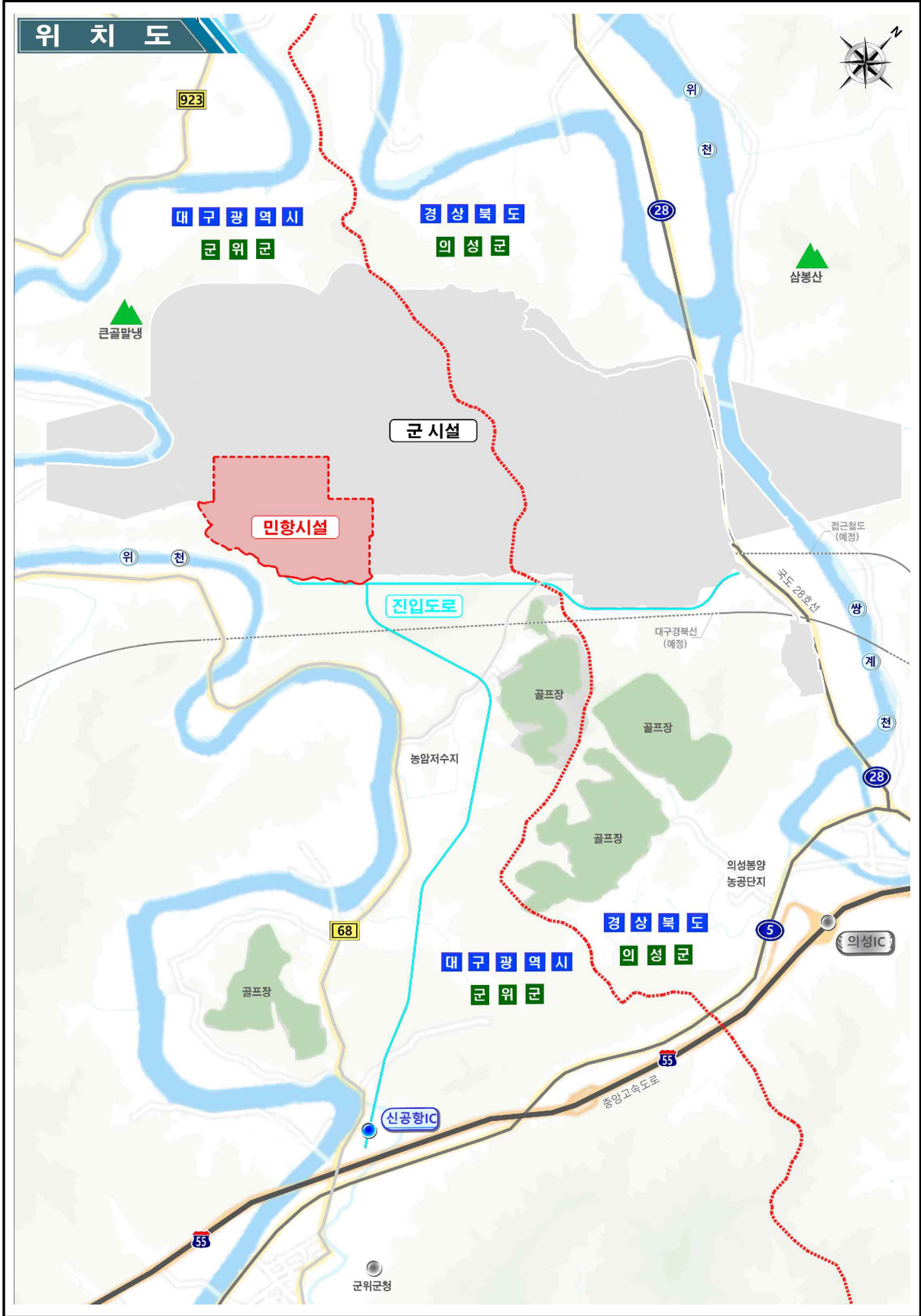
〈표 1.6.7-1〉 시설 배치 계획(안)

구분		기본 계획(안)	비고
완공연도		2030년	-
공항 시설	부지면적	138만 m ²	-
	활주로	3,500×46m, 1본 ^{주1)} (2,744×46m 軍, 756×46m 民)	05-23 방향
	계류장	여객계류장	23대
		화물계류장	3대
		합계	26대
	건축시설	여객터미널	국내선 16,485m ² 국제선 85,593m ²
		화물터미널 ^{주2)}	국내선 108m ² 국제선 9,757m ²
	주차장	3,113대	-
	부대건물	계류장 관제탑, 관리동, 동력동, 급유시설 등	-
접근 도로	연장	11.0km, 3개소	-
	시설물	교량 0.7km/7개소, IC 4개소	-

주1) 기존 군 공항 활주로 2본 중 1본 연장(2,744m→3,500m)

주2) 의성지역 화물터미널은 현재 화물터미널 전문가 검토기구를 통해 검토 중으로 향후 화물터미널 전문가 검토기구 및 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를 통해 결정 시 별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정

[그림 1.6-1] 위치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2.3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 주관 행정기관 : 국토교통부(계획수립 및 승인기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부,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일자 : 2024. 03. 27.
- 결정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 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총 11인

구 분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승인기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 ○ ○	
위원	협의기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 ○ ○	
	관할지방환경관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 ○	
	승인기관 추천 공무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 ○ ○	
	지자체 추천 공무원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 공항정책팀	○ ○ ○	
	지자체 추천 민간전문가	대구경북녹색연합	○ ○ ○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 ○ ○	
	위원장 추천 민간전문가	교통대학교	○ ○ ○	
	시민단체 추천	경북자연사랑연합	○ ○ ○	
	주민대표	군위군 이장연합회	○ ○ ○	
		공항이전지원위원회	○ ○ ○	

[그림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안내 공문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된 심의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2024.3.27.(수) 14:00 / 국토교통부(세종청사) 6동 457호 회의실

나. 안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다. 행정사항

- (1) 회의실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2024.3.27.(수) 13:40까지 정부세종청사종합 안내실(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 집합하여 주시고, 이후 국토부 관계자 인솔 후 이동 예정입니다.
- (2) 외부기관(단체) 소속 위원께서는 사전출입신청을 위해 생년월일 정보를 김 [redacted])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 총괄의견

- 평가준비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반영됨.
-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및 본안 협의단계에서 적절히 반영 필요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함.
- 민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부지에 이전 예정인 대구 군공항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23년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먼저 실시되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민간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측정되었던 각종 환경질 및 조류이동성 등 생태계 조사 결과를 필요시 민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각 항목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됨.
-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 바람
- 본 사업은 경북 군위군 소보면 및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주변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23.4.13.)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본 건은 대구광역시 소보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을 대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임.
- 사업예정지 주변(철새도래지 등)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중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활주로 규모, 방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입지 적정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고려한 소음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함께 조성 예정인 군 공항의 운영으로 인한 누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경상북도 의성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3.4.)」에 따라 협의회에서 제시된 심의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작성하고, 반영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민간공항 입지는 최적안인 부지 중간에 위치하여야 하며, 여객터미널은 군위군,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에 입지가 최적안이다. 군사시설계획과 잘 고려하여 통합공항건설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안이 어려울시 의성군 부지에 복수화물터미널을 입지하는 안이 향후 공항개발이 안정될 수 있는 차선택이 될 것이다.
- 소음평가의 경우 군용기와 민간항공기의 복합소음을 시뮬레이션하여 예상되는 소음피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복수화물터미널 합의사항에 대한 계획이 없고 의성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등 모든 용역 중지.
- 의성주민 수용 불가.

* 총괄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1.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3년에 선행하여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군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사 자료를 검토 및 활용하고, 민항과 군공항으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의성지역 화물터미널에 건설 결정시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정

□ 심의의견

1. 환경보전목표 설정

- 공항 규모와 운항 계획, 군용기에 의한 누적 소음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기준과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소음·진동, 조류 충돌 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이전 사업 설정내용, 비행노선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항목별로 활주로 건설 및 연계사업(계류장 등 공항시설, 진입도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평가범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조류 이동성의 평가범위를 13km로 설정하였으나 서측으로 13.2km, 13.4km 이격된 철새 도래지 현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
- 대상지역은 군공항 운영에 따른 누적영향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항공기의 운항 패턴에 따라 소음 분포의 변동 폭이 크므로, 추후 항공기 소음 예측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을 확대·검토하여야 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복수 화물터미널이 사실상 추진될 것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부지에 대한 표시도 필요하며 대상지역 설정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 검토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협조를 받으면 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1. 조류 이동성 조사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며, 설정된 평가범위 13km를 유지하되 평가범위 밖의 철새도래지 현황 또한 포함하여 검토 예정.

3. 토지이용구상안

- 구체적인 안의 제시가 필요함.
- 제시된 토지이용구상안은 Airside / Landside와 진입도로 대상부지 정도로 동 계획의 입지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기에 정보가 부족함.
- 평가서 작성 시 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시 필요.
-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대안 검토 시 항공기를 비롯한 공항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적 영향 및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과 방안(활주로 규모 및 방향, 관련 시설물 입지, 진입도로, 이동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경보전지역, 인접한 정온시설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 시 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시가 필요함.
- 공항부지 한쪽에 치우친 토지이용구상안은 적절하지 않다.
- 공항부지의 배치를 중간으로 하여 군위군과 의성군에 고르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 토지이용계획 반영계획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1. 구체적인 토지이용구상안은 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간 협의단계이므로 초안 제출 시 제시 계획.
2. 공항부지 배치와 관련하여 환경 보전성, 공항 운영의 효율성, 기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과의 정합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4. 대안

- 본 사업은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예정부지 이외 대안 고려가 어려운 건임. 따라서 기본·실시계획 수립 시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전사업에서 계획 중인 진입도로·철도와 동 사업에서 계획 중인 진입도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중복계획 여부, 공유 가능성 등) 계획 반영(도로 계획 수정 등) 필요.
- 대안의 비교·분석시 환경적 측면의 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평가지표는 최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산정하여야 함.
-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민간공항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입지로 대상부지 중앙이 적정부지이며 군사시설 계획으로 인한 시설배치계획이 어렵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여객터미널은 군위군에,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에 입지가 최적이며, 이러한 입지배치가 어려울 시 별도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여 복수화물터미널로 추진하면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므로 국방부와 국토부가 잘 협의하여 최적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소음측정과 관련하여 군용기와 민항기의 소음을 종합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여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를 산정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소음영향평가 종합주체에 대해서는 군 이외의 기관의 군용기 소음측정 가능여부, 보안사항인 군의 군용기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국토부 자료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이를 위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시행기관인 국토부, 국방부(대구광역시)가 별도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음.
- 민항기에 대한 소음영향범위를 검토 바람.
- 군용기에 대한 소음영향범위는 군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참조 바람.
- 비행장 주변의 거주지역과 축산 농가 등의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현황조사를 실시 바람.
- 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사시기·지점·횟수를 선정하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을 고려하여 조사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역 내·외 주요 환경현황(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역)을 고려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 운영 시 비행노선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영향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군용기 소음과 합성하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계획지구 인근 철새도래지에 미칠 영향은 이전사업 예측 내용을 고려하여 예측하고 저감방안 수립.
- 사업대상지 인접·유사지역의 환경 DB, 공간·문헌 정보 등 누적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중복 조사를 지양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등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활주로 규모 및 방향을 고려한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와 연계하여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주변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공항 건설 및 운영이 중장기적으로 사업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계의 생태적 기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함(군공항의 운영을 함께 고려한 평가가 필요).
- [대기질, 온실가스] 향후 항공기 운항량, 승객 이용률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배출량 변화,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질(온실가스 포함) 영향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지형·지질] 주요 절·성토 구간 및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항 및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과도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음진동]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에 따른 항공기 소음 영향을 활주로 규모를 포함한 공항 운영계획 정보(항공기 종류, 대수, 경로 등의 변화 등)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되 인접한 군 공항의 운영, 진입도로의 차량 운행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구] 공항 건설은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이 큰 사업유형에 해당함. 따라서 생활환경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규모, 소음 등에 대한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및 밀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민감 계층을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예측은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고, 공항 규모와 운항계획, 군용기 운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철새 서식과 이동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기 충돌 등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여야 함.
- 사업지역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15.12.9.)에 따라 민간공항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영향과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음항목의 경우, 군용비행기에서의 예상되는 소음발생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피해를 평가하여야 한다. 즉,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을 통합하여 복합소음평가가 필요하다.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1.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 군 공항 이전사업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군 공항과 민항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2. 군용기 이용횟수, 주요 경로를 포함한 군용기 소음 자료 등에 대한 공유는 군사 보안 상 군 및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가중 문제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작성하여 평가서 초안과 함께 비치하고 주민에게 배포하는 등 (on-off line)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기존의 공고·공람, 설명회, 필요시 공청회로 이어지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추가적인 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공항 건설로 인한 편익의 지역적 배분 등을 주변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영향지역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 조사, 갈등 발생 가능성, 지역주민의 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의견 등을 탐문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중오픈하우스, 포커스그룹미팅, 갈등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사회조사 방법론 적용 검토
 -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결정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 의성군을 포함한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을 시 주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적극 수용·개최하여야 함.
- 기존의 주민의견수렴방법보다 읍면동사무소와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일정기간 해당내용을 숙지한 사람들이 설명하며 의견수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7. 기타

- 참고자료로 군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 바람.
- 본 계획의 타당성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군 공항 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장래 항공수요 등을 토대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민간공항부지는 타당성이 부족하며 공항부지 중간에 위치가 외부 기반시설과 조화로운 입지라고 판단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김○○

[그림 2.1-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 총괄 의견 ○ 본 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을 대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임 ○ 사업예정지 주변(철새도래지 등)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등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구, 규모, 방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입지 적정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고려한 소음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함께 조성 예정인 군 공항의 운영으로 인한 누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의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항목별로 활동구 건설 및 면제사업(대규모 광항시설, 진입도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평가범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조류 이동상의 평가범위를 13km로 설정하였으나 서쪽으로 13.2km, 13.4km 이격된 철새도래지 위치 현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 3.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대안 검토 시 항공기를 비롯한 공항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적 영향 및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과 방안(활동구 규모 및 방향, 관련 시설물 입지, 진입도로, 이동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4. 대안 ○ 의견없음 5.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등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활동구 규모 및 방향을 고려한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와 연계하여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주변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공항 건설 및 운영이 중장기적으로 사업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계의 생태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함(군공항의 운영을 함께 고려한 평가가 필요) ○ [대기질, 온실가스] 항공 항공기 운행량, 승객 이용률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배출량 변화,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질(온실가스 포함) 영향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지형·지질] 주요 절·성토 구간 및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항 및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과도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음·진동]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에 따른 항공기 소음 영향을 활동구 규모를 포함한 공항 운영계획 정보(항공기 종류, 대수, 경로 등의 변화 등)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되 인접한 군 공항의 운영, 진입도로의 차량 운행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구] 공항 건설은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이 큰 사업유형에 해당함. 따라서 생활환경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규모, 소음 등에 대한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및 밀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민감계층을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존의 공고·공람, 설명회, 필요시 공청회로 이어지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추가적인 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공항 건설로 인한 편의의 지역적 배분 등을 주변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영향지역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 조사, 갈등 발생 가능성, 지역주민의 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의견 등을 탐문조사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중이용하우스, 포커스그룹인터뷰, 갈등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사회조사 방법론 적용 검토 -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결정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7. 기타 ○ 의견없음 2024. 03. 29. 심의위원 (인)
한국환경연구원 최○○	
[별지 제1호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경상북도 의성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사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3.4.)에 따라 협의회에서 제시된 심의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작성하고, 반영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공항 규모와 운항 계획, 군용기에 의한 누적 소음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기준과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군공항 운영에 따른 누적영향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항공기의 운항 패턴에 따라 소음 분포의 변동 폭이 크므로, 추후 항공기 소음 예측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을 확대·검토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경보전지역, 인접한 정온시설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4. 대안 ○ 대안의 비교·분석 시 환경적 측면의 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평가지표는 최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선정하여야 함 ○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대안 ○ 대안의 비교·분석 시 환경적 측면의 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평가지표는 최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선정하여야 함 ○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예측은 신뢰성이 높은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공항 규모와 운항 계획, 군용기 운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철새 서식과 이동경로, 철새 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기 충돌 등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여야 함 ○ 사업지역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15.12.9)에 따라 민간공항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영향과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성군을 포함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을 시 주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적극 수용·개최하여야 함.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본 계획의 타당성을 상회계획 및 관련계획(군 공항 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강대 항공수요 등을 토대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2024. 0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대구지방환경청 고○○	

[그림 2.1-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의견 없음 (과감)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3. 토지이용 구상안

○

4. 대안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24. 0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계속>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 권○○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의견 없음 (이파 감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3. 토지이용 구상안

○

4. 대안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24. 0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계속>

군위군 김○○

20

[그림 2.1-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건

○ 의견 없음 (이하 가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3. 토지이용 구상안
○

<계속>

4. 대안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24. 0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경북자연사랑연합 김OO

21

2.3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3.1 대상지역 설정

〈표 2.3-1〉 평가항목별 평가 대상지역 및 설정 사유

구 분			설정사유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와 기본방 향 부합성 확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및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한 계획수립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식물상·식생, 양서류, 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계획지구 경계 0.1km ○ 포유류·조류 -계획지구 경계 0.3km ○ 조류 이동성 -공항시설 경계 13km (진입도로 제외)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수립으로 인한 지형·지질변화 및 생태축 훼손 지역
	생활 환경의 안전성	자연경관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지역
		수환경 보전		○ 계획수립으로 인한 수질 및 수리·수문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지역 및 수계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 상	○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기상개황 및 국지 기상 현황
			대기질 (악취)	○ 공사시 토공사 및 장비투입으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항시설 운영 및 항공기 운행으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진입도로 운영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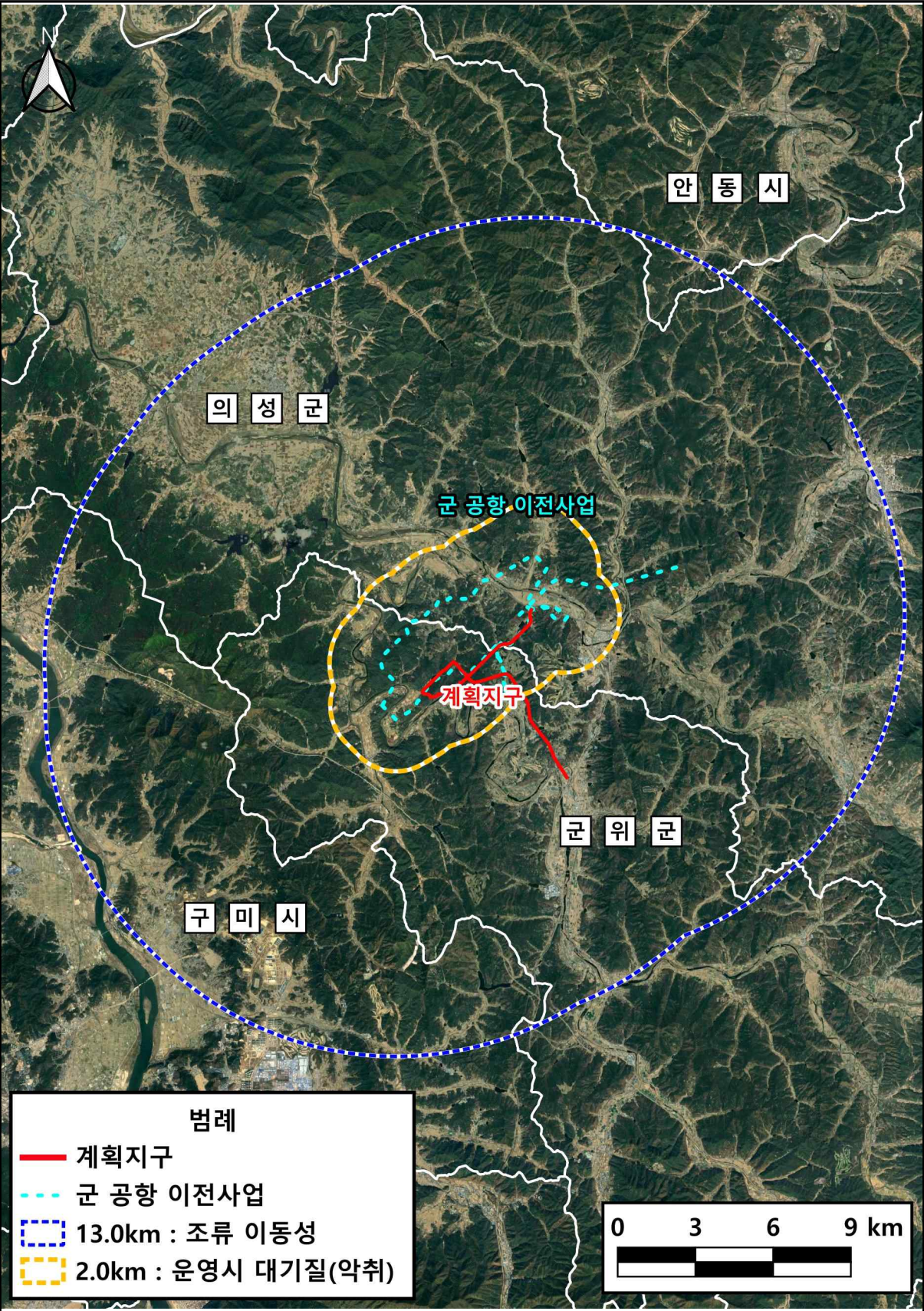
<계속>

구 분				설정사유	대상지역 범위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온실 가스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고정 및 이동배출원의 온실가스 발생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토 양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 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 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발파 등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 지역 ○ 운영시 항공기 운행 및 진입도로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 영향 예상 지역 ○ 군 공항 소음 누적평가 : 군용기 소음 측정 자료 등에 대한 군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여부 결정	○ 공사시 계획지구 경계 로부터 0.5km 이내 ○ 도로단으로부터 0.5km ○ 항공기 소음 57Lden dB(A)이상인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장래 계획 검토 및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현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 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생활폐기물, 오수 등 폐기물 발 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되는 지역	○ 계획지구
		인구· 주거		○ 계획시행으로 인구 및 주거 변화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산업		○ 계획시행으로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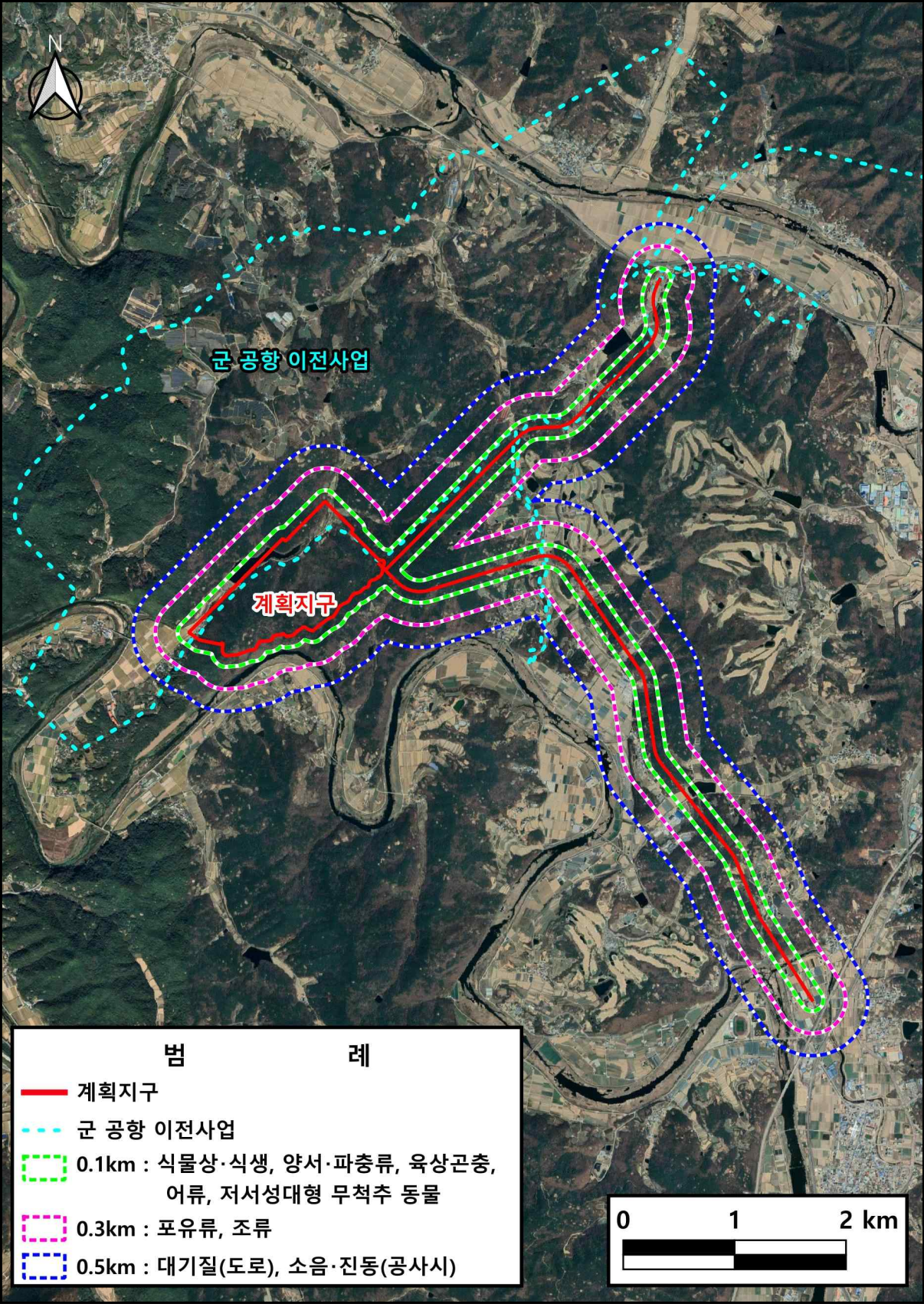
주1) 운영시 항공기 소음 대상지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61LdendB(A)이상) 및 인근지역(57LdendB(A)이상)을 포함하는 지역임

주2) 조류 이동성 및 대기질(항공기 운영시) 대상지역설정 기준은 진입도로를 제외한 군 공항과 본 계획의 공항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함.

[그림 2.3-1] 대상지역 설정도(조류 이동성, 대기질)



[그림 2.3-2] 대상지역 설정도(조류 이동성 외)



2.3.2 토지이용구상안

가. 기본 방향

- 경제성, 환경성, 적합성과 계획지구와 인접한 군 공항 계획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 군 공항과 민항의 접속구간 안정성 확보
- 교통수요 예측을 통한 접근도로 시설규모 산정 및 접근철도 연계성 검토

나. 토지이용계획(안)

- 계획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북측으로 연결하여 계획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임.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서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관계기관 의견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단계 등에서 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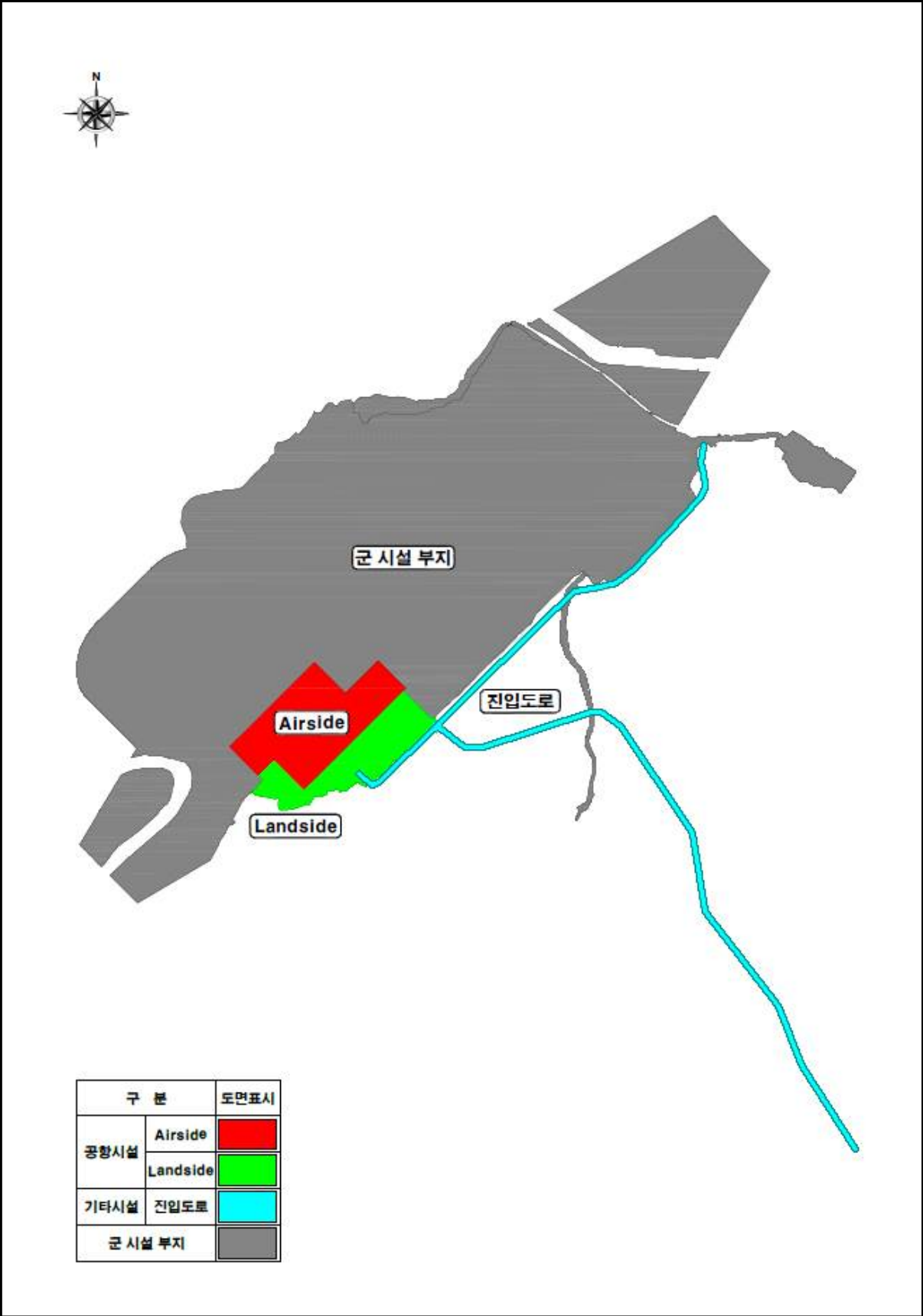
〈표 2.3-2〉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기본 계획(안)	비고
완공연도		2030년	-
공항 시설	부지면적	138만 m ²	-
	활주로	3,500×46m, 1본 ^{주1)} (2,744×46m 軍, 756×46m 民)	05-23 방향
	계류장	여객계류장	23대
		화물계류장	3대
		합계	26대
	건축시설	여객터미널	국내선 16,485m ² 국제선 85,593m ²
		화물터미널	국내선 108m ² 국제선 9,757m ²
	주차장	3,113대	-
	부대건물	계류장 관제탑, 관리동, 동력동, 급유시설 등	-
접근 도로	연장	11.0km, 3개소	-
	시설물	교량 0.7km/7개소, IC 4개소	-

주1) 기존 군 공항 활주로 2본 중 1본 연장(2,744m→3,500m)

주2)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향후 세부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3-3] 토지이용계획도



2.3.3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음.

〈표 2.3-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선정	제외	
			17	4개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검토 ○ 환경관련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 규제 저촉여부 확인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	○ 계획시행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서식환경 변 화 검토
		자연환경자산	◎	-	○ 계획지구 인근 자연환경자산 조사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	○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공발생 ○ 계획지구 내 비탈면 발생지역 및 처리대책
		자연경관	◎	-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 관련 보전 용도지역 등 검토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수환경 보전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현장 근무인력의 오수 발생에 의한 영향 ○ 운영시 점·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영향 ○ 각종 수 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에 직·간접인 영향여부 검토
	생활 환경 안정성	해양환경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없음
		기 상	◎	-	○ 계획특성상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함 -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악취포함)	◎	-	○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영향
		온실가스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검토
		토 양	◎	-	○ 공사시 폐유 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소음·진동	◎	-	○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 운영시 항공기소음 및 이동오염원에 의한 소음· 진동 영향
		일조장해	-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없음
		위생·공중보건	-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없음
		전파장해	-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없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계획지구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편입용지 및 토지이용의 환경적 적절성 검토 ○ 계획시행시 토지이용변화 검토
		인구 및 주거	◎	-	○ 인구·주거의 변화여부 검토
		산 업	◎	-	○ 산업의 변화여부 검토

나.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사업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3-4〉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계획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 검토를 통한 생태계의 변화 정도 비교·분석, 보전방안 검토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 조류 이동성 조사(철새도래지 포함)를 통한 항공기-충돌 위험성 평가 및 방지대책 검토	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지형 및 지질 현황 조사 ○ 지형변화 및 지반안정성 검토	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영향 검토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경관
		수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계획 검토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오염원 파악, 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수질 (수리·수문)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지구 경계-대기질 2.0km-소음진동 500m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질 및 정온시설 현황 조사 ○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토양오염원, 온실가스 발생 현황 등 파악, 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 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환경영향 예측 ○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 소음 모델링을 통한 항공기 소음영향 예측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 계획시행 시 발생오염물 처리계획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친환경적 자원순환
입지의 타당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를 통한 인구·주거, 산업 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산업

다. 환경 현황 측정·조사계획

- 본 계획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원에 현재 진행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부지에 인접하여 신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임.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작성 및 검토가 완료된 상황으로 계획지구 일대의 환경질 측정, 생태계 조사, 조류 이동성 조사가 최근에 시행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조사한 현황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1) 현지조사

- 계획지구와 인접한 유사사업의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자료를 고려하여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현지조사를 2회 계획하였으나 현지조사 횟수, 지점, 항목 등은 관계기관 협의, 추진계획, 현장조사 내용 등에 따라 변경하여 계획할 예정임.

〈표 2.3-5〉 환경질 현지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비 고
대기질	○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8항목)	4지점	2회	3일 연속
악 취	○ 복합악취(1항목)	4지점	2회	-
지표수질	○ pH, BOD, COD, DO, SS, 총대장균군, T-N, T-P,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⁶⁺ , ABS, 유량, 수온, TOC, 클로로필 a, NO ₂ -N, NO ₃ -N, NH ₃ -N, PO ₄ -P (25항목)	5지점	2회	-
지하수질	○ pH, 총대장균군, NO ₃ -N, Cl ⁻ , SO ₄ ²⁻ , NH ₃ -N, KMnO ₄ 소비량, 맛, 냄새, 탁도, 색도, 증발잔류물, 경도, Cd, As, Pb, Cr ⁶⁺ , Al, Zn, Fe, Mn, Hg, 일반세균, 페놀, Cu(25항목)	4지점	2회	-
토양	○ Cd, Cu, As, Hg, Pb, Cr ⁶⁺ , Ni, F, Zn, 유기인 화합물, PCB, CN, 페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PCE, T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22항목)	4지점	2회	-
소음·진동	○ 주·야간 소음도 ○ 주·야간 진동도	17지점	2회	-

주) 소음·진동 측정지점 선정시 주거지역 및 축사 등의 민감시설을 고려하여 선정

〈표 2.3-6〉 동·식물상 현지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주기
동· 식물상	육상	○ 식물상 및 식생, 육상 동물상	○ 문헌조사 자료시 미조사지점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1~0.3km - 식물상·식생, 양서류, 파충류, 육상 곤충, 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1km - 포유류, 조류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3km	2회
	육수	○ 수생식물군집, 수생 동물 등		
○ 조류 이동성 조사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조사한 현황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 활용	-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대 구 경 북 통 합 신 공 항
(민 간 공 항) 건 설 사 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 정 내 용

3.1 평가항목 · 범의 등의 결정내용

3.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3.1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3.1.1 결정내용 공개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항목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 (공개장소)
 - 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 ②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3.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주민의견 반영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반영방법)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

3.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2.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관계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한 후 의견수렴
 - ① 협의기관, 관할 환경청
 - ② 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 ③ 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 (의견통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공고주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
- (공고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방법)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① 일간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 ② 지역신문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 (공고내용)
 - ①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③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④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②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기간) 20일 이상 40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와 협의

3.2.2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가. 설명회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개최주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
- (개최시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내
(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시 설명회 개최 내용포함
- (개최장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와 협의

나. 공청회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개최조건)
 - 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②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공고)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결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

3.2.3 주민 의견제출 방법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제출기간) 공람기간 시작일 ~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 (제출의견)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3.2.4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
- (공개내용)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14일 이상 게시
- (공개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